

의안번호	2125875
의 퇴 인	이만희의원
회 답 일	2023.01.09.
추계번호	23D5005

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12조제1항 (총괄재난관리자의 선임)	초고층 건축물 등의 관리주체는 다음 업무를 총괄·관리하게 하기 위하여 총괄재난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 - 제9조에 따른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수립·시행 - 협의회의 구성·운영 - 제14조에 따른 교육 및 훈련 - 제16조에 따른 종합방재실의 설치·운영 - 제17조에 따른 종합재난관리체제의 구축·운영 - 제18조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의 설치·운영 - 제19조에 따른 유해·위험물질의 관리 등 - 제22조에 따른 초기대응대의 구성·운영 - 제24조에 따른 대피 및 피난유도 -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	의무규정
2	안 제20조의2 신설(조치명령)	소방청장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주체에게 보완 또는 수리·개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음	재량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12조제1항 (총괄재난관리자의 선임)	·기 실시 사업 제9조, 제14조~제19조, 제22조, 제24조는 현행법에 따라서 실시되고 있으며, 개정안에서 신규로 규정한 협의회의 구성·운영 등은 총괄재난관리를 위한 비상 연락체계를 위한 것으로 추가재정소요가 없거나 미미할 것을 예상
2	안 제20조의2 신설(조치명령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□ 조치명령(안 제20조제1항 신설)

-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관리주체에는 서울시, 경기도 등 지방자치단체 등이 포함되어 있어 개정안에 따라 소방청장 등이 관리주체에게 보완 또는 수리·개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경우 해당 조치에 따라 추가 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 - － 소방청장 등이 명할 수 있는 조치 중에는 종합방재실 설치·운영, 피난안전구역 설치·운영, 유해·위험물질 반출·반입 관리를 위한 위치정보 등 데이터베이스 구축·운영 등이 있음
- 다만, 지방자치단체 등이 관리하고 있는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에 대한 소방청장 등의 조치명령 건수, 조치명령의 종류, 조치명령에 따른 보완 또는 수리·개조 등에 소요되는 평균 비용 등을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워 추계가 곤란함
 - － 참고로 소방청에 따르면, 2023년 기준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 등이 관리주체인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수는 총 468개동이 있고 대부분이 지하철 역사와 연계된 청사로서 서울시와 경기도에 위치하고 있음

Ⅲ. 부대의견

☐ 없음

Ⅳ. 작성자

☐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행정비용추계과	이미연	오명희

☐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이미연	02-6788-4661	mylee@nabo.go.kr